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의과대학 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신대학교 학칙 및 기타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에 별도로 정하도록 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등 록

제2조 (학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제 3 장 수강 신청

제3조 (학기당 이수학점) 의과대학의 수강신청은 일괄처리하며 매학기 18학점이상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의학과 3, 4학년의 경우는 학점신청 기준 및 이수학점에서 예외로 한다.

제4조 (장학금)

① 다음의 경우 그 다음 학기에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전 학기 성적평균이 75점 미만인 자

나. 경건회 규정에 따른 이수 조건에 미달한 자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과대학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4 장 수 업

제5조 (개설 및 폐강)

① 매학기 학장의 허가로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의예과 선택과목의 경우 수강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때 이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휴강 및 보강) 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학년 및 학기, 수업일수)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기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나.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 통산 30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매학기 수업일수는 15주 이하로 할 수도 있다.

제8조 (특별강의)

① 전공수업을 위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강의를 원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특강신청서(별첨 서식 1호)를 작성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성적취소 및 평가, 추가시험, 재시험

제9조 (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한다.

①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성적 전부

② 시험 중 부정행위자의 해당과목 성적

③ 출석이 미달된 과목의 해당과목 성적

제10조 (성적평가 및 사정)

① 성적산출기준은 절대평가로 하며 백분율로 표기한다.

② 사정은 성적 집계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의과대학 교수회

의에 보고한다.(개정 2024.03.19.)

③ 평균점수의 소수점이하 셋째자리는 버림하고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제11조 (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병으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할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는 학교가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입대, 병무소집으로 응시하지 못할 시는 소집영장이나 입대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할 때는 이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추가 시험은 시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성적은 89점 이하로 평가한다.

제12조 (재시험) 재시험은 성적 제출 이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출석인정)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경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결석계(별지 서식2호)를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구 분	대 상	출석인정 일수
결 혼	1. 본인 2. 자녀 3. 형제·자매, 3촌이내에 해당하는 친척	5 1 1
회 갑	부모, 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부모의 직계존속 2. 배우자 3. 자녀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5 5 5 3 1
군신체검사	본인	1
예비군훈련	본인	1
기 타	증명서 첨부	승인일

제 6 장 성적의 열람, 정정 및 통지

제14조 (성적의 열람 및 정정)

① 학생은 매학기 성적을 소정기간 내에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①항의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한 기일이 경과하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제15조 (이수성적 확인)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학기 성적이 확정되고, 학생은 자신의 성적을 상시 조회 또는 성적통지표를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21년 8월 31일)

제 7 장 재입학

제16조 (재입학 자격 및 기한)

① 본 대학 재적 중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2개 학기(제적학기 포함)가 경과한 후 제적 이전의 학과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학사징계 포함)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학칙 제14조에 의한 재입학 신청자는 재입학 허가신청서(별지 서식 3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학 신청인원이 재입학 여석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순으로 허가한다.

가. 취득학점이 많은 자

나. 고학년인 자

다.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③ 재입학 허가 시 학년 인정은 제적 당시의 학년으로 하며 학점인정은 재학당시의 취득학점을 모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입학 후 교과과정이 개편된 경우 개편된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⑤ 재입학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등록금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학기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재입학 포기로 간주하여 재입학 취소 처리한다.

제 8 장 유급제 운영

제17조 (유급제 운영) (개정 2012년 6월 22일, 개정 2024년 3월 19일)

① 의예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을 적용한다.

가.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F등급(60점미만)이 있는 자

나. 해당학기 평균점수가 70점미만인 자

② 의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을 적용한다.

가.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F등급(60점미만)이 있는 자

나. 해당학기 개설된 필수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D등급(60~69점)이 있는 자

다. 해당학기 평균점수가 70점미만인 자

③ 유급제의 운영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고 유급된 학생의 당해 학기에 취득한 모든 학점은 인정 되지 않는다. 단, 의학과 3, 4학년은 당해 학년에 취득한 모든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2년 6월 22일)

④ 유급에 의하여 재학 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한다.

단, 학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 9 장 졸 업

제18조 (졸업의 요건)

① 의학과에서 16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전 학년 평균 70점 이상인자

③ 학생 경건회 참석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자

④ 의학과 4학년에서 실시하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1년 12월 7일)

⑤ 의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의학사(B.M) 학위를 수여한다.

제 10 장 휴학 및 복학

제19조 (휴학의 종류)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 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 휴학 : 질병, 가정 사정, 당해 학기 등록이 불가능한 자, 기타 특별한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자

② 군 입대 휴학 : 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지원입대를 위하여 휴학하는 자

제20조 (휴학원 제출)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별지 서식 4호)와 사유서(별지 서식 5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 및 사무팀을 경유한 후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미등록한 자가 정한 기간 안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적처리한다.

제21조 (일반휴학)

① 일반휴학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일반휴학은 총 수업일수의 1/4일수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의학과 4학년 2학기는 3/4일수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기간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교학관리팀에 군 입대에 따른 '(군)휴학변경신청서'(별지 서식 6호)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최대 휴학기간이 지난 후 복학하지 아니하면 제적 처리된다.

④ 의예과, 의학과의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은 입학당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단, 의무입대 및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질병의 경우에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휴학기간의 종료는 복학원서를 제출하는 학기 직전까지로 한다.

제22조 (군 입대 휴학)

① 군 입대 휴학자는 군 입영통지서 또는 소속부대장이 발행하는 복무 확인서를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 입대 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부사관의 경우 최대 5년까지로 한다.

제23조 (휴학과 등록금)

①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가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에 기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한다.

휴학일	대체인정금액
수업일수 1/4까지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

② 의학과 4학년 2학기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 가능한 수업일수까지 등록금 전액 대체를 인정할 수 있다. [2010.12.02]
③ 군 입대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휴학시기에 관계없이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제 24 조 (복학원 제출)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필한 후 교학관리팀에 '복학원서'(별지 서식7호)와 각종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군복무 또는 개인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1/4 이내에 복학할 수 있다.

제 11 장 인적사항 변경신청

제25조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상의 인적사항(본적,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호적초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관리팀에 인적사항정정신청서(별지 서식 8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장 제 증 명

제26조 (제 증명 발급)
① 제 증명서는 발급은 본 대학 교학관리팀에 신청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거나, 자동발급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장 의과대학 교수회의

[신설 2011년 9월 28일,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27조 의과대학 교수회의는 본 대학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제28조 의과대학 교수회의는 의과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하며, 년 1회 이상 참

석하여야 한다. 그 외의 직원은 교수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회의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29조 의과대학 교수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의 설치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졸업, 수료 및 진급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사에 관한 제반사항

제30조 의과대학 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유급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0학년도 의예과 2학년은 이전 유급 규정을 적용한다.
3. 본 개정 내규는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내규는 201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내규는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내규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내규는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호

특 강 신 청 서

_____에서는 _____대학 _____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특강을 가지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 장 소 :
3. 강 사 :
4. 제 목 :
5. 특강료 :

20 . . .

_____교실 _____교수 (인)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장 귀하

별지서식 2호

결 석 계

학 과 : 과 학년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1. 결석 사유 :

2. 결석 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20 년 월 일

붙 임 : 증빙서류 1부.

위 본 인 (인)
수업담당교수 (인)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장 귀하

별지서식 3호

재입학 허가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제적 및 학적상실일자	년 월 일		
제적 및 학적상실사유			
재 입 학 희 망 시 기	학년도 학기 (학년 학기)		

본인은 금번 재입학이 허가되면 학업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호자 연서로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본 인 : (인)

보 호 자 : (인)

첨 부 : ① 재입학허가대상자 조서 1부
② 지도교수 의견서 1부
③ 학적부 사본 1부 끝.

고신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4호

휴 학 원 서

제출인기재란①	인적사항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성 별	남 • 여	연락처	집: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주 소					
	휴학내용	입 영	20 년 월 일 ~ 년 월 일			영장사본 첨부	
		일 반	20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업일수 3/4까지 가능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제출인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입영통지서(사본) □, 진단서 □, 기타( )□					
	제출일자	20 년 월 일		위본인 : (성명 또는 날인) 보호자 : (성명 또는 날인)			

고신대학교 총장 귀하

절차	휴학원서교부(교학관리팀) → 확인도장(지도교수, 학과장, 사무팀, 도서관) → 접수(교학관리팀)	학적관리	접 수
			(인)

경유	지도교수	학과장	사무팀	도서관
			년 학기 등록여부 ₩	

결재	담 당	계 장	팀 장	부학장	학 장	총 장

첨부 : 사유서 1부.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의과대학 내규 8-0-1

사 유 서

인적사항	학 과		학 번	
	학 년		성 명	

사유 (구체적으로 서술) :

※ 휴학자서약서

1. 일반휴학 또는 군 입대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는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2. 일반 휴학 기간 중에 군입영통지서를 발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교학관리팀에서 군 입대에 따른 휴학변경신청절차를 밟을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적 처리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본인 : (인)

보호자 : (인)

별지서식 5호

※ 굵은선 안쪽은 모두 작성하세요.

(군)휴학 변경신청서

학과 / 학년	과 / 학년	학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 -)		
전화번호	( ) -	휴 대 폰	

위 본인은 일반휴학을 출원하였으나 별첨과 같이 군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변경기간 : 20 . . . ~ 20 . . .

◎ 첨 부 서 류 : 군입영통지서 사본1부

신청인 : (인)

의과대학장 귀하

결재	담 당	팀 장	부학장	학 장

접수

✂ ✂

(군)휴학 변경신청서 접수증

학 번		학부(과)		성 명	
휴학변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락 처	

접 수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wwww.kucm.ac.kr)학생정보서비스)에서 주소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2. 복학은 학기 초 등록기간에 하여야 합니다(단, 군 제대자는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할 수 있음).
3. 복학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일반휴학으로 변경되어 연장 휴학처리되며, 휴학가능 최대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미복학제적'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의과대학 내규 8-0-1

별지서식 6호

복 학 원 서

학 과	과 학년	학 번	
성 명		성 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현 주 소	(우 -)		

1. 휴학분류 : 일반 , 군입대
2. 휴학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복학일자 : 년 월 일 ~ 복학 (학년 학기)

첨 부 :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 일반휴학자는 구비서류 없음.

휴학사유가 종료되어 금학기부터 복학하고자 원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본 인 : (인)

보 호 자 : (인)

고신대학교 총장 귀하

경유	지도교수	사무팀
		₩ (미등록)

교학관리팀	담 당	계 장	팀 장	부학장	학 장	총 장

별지서식 7호

인적사항 정정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휴대폰]			
	학 과		학년	학번	
정정내용	정정사항	변경전		변경후	

위와 같이 인적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 초본 1통.